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4
----------	-----

2019년 4월 2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3.28.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찬성자 노식래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9.3.29.

다. 상정 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19년 4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미출석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조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서류 미제출과 증인 미출석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 시한을 규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명칭과 조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감사·조사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과태료 처리 결과의 의장 통지 시한 규정 등 (안 제9조제1항 등)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본회의, 감사 혹은 조사위원회는 효과적인 감사·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27조, 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이에 따라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요구 주체와 부과 주체가 분리된 현실에서 <표-1>과 같이 과태료 부과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 여부를 의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붙임 2 참조).

<표-1>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 요약('19.4.11 기준)

시의회의 과태료 통보	부과		미부과		시의회에 결과 통지	
	소요 기간(6개월)	소요 기간(11개월)	사유 기재	사유 미기재	통지	미통지
총 17건	4건	3건	4건	6건	10건	7건

-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의의회 중 5개 의회(광주, 울산, 전북, 경남, 제주)는 조례를 통해 의회 보고 시한을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음(붙임 3 참조).
-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증인불출석 등의 죄에 대해 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과태료 처리 결과 보고의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른 광역시도의의회 사례를 고려하여 그 보고 시한을 의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기한을 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1개월 이내: 경남·제주 의회, 30일 이내: 광주·울산·전북 의회).
- 또한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과태료 처리 결과의 의장 보고 시한을 “지체없이”로 규정

하고, 조례 명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밝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행하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며,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4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8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1명)

찬 성 자 : 노식래, 김정태, 김광수,
이영실, 오현정, 정진술,
권영희, 송정빈, 문장길,
오중석, 김화숙, 고병국,
임종국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미출석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조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52조 에” 를 “제52조에” 로 하고, “행하는” 을 “실시하는” 으로 한다.

제3조 중 “감사와 조사의 활동” 을 “감사·조사활동” 으로 한다.

제5조 중 “행하는 의원” 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장” 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언어 사무처장” 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한” 을 “요구하였을”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일괄 수합하여” 를 “수합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을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 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을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으로, “제출할 것을” 을 “제출하도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38조에” 를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8조를” 로, “거부 시” 를 “거부 시” 로, “명시하여야” 를 “분명하게 밝혀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3항” 을 “법 제41조제4항” 으로, “발부한다” 를 “발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를 “않는 경우의 법령상” 으로, “기재한다” 를 “쓴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대하여” 를 “사람에 대해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아니하거나” 를 “않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증언을 한 자를” 을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로 한다.

제11조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u>행하는</u>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52조에</u> ----- ----- <u>실시하는</u> ----- ----- -----.</p>
<p>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u>감사와 조사의 활동</u>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p>	<p>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u>감사·조사활동</u>----- ----- -----.</p>
<p>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감사와 조사를 <u>행하는</u> 의원이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p>	<p>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 -- <u>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u>-----.</p>
<p>제6조(사무보조) ① (생략)</p> <p>② <u>의장</u>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사무보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p> <p>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u>얻어 사무처장</u>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u>요구한</u>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u>일괄 수합하여</u>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p> <p>① ----- ----- ----- <u>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이라 한다)</u>-----.</p> <p>② ----- <u>요구하였을</u> -- ----- ----- ----- <u>수합하여</u> -----.</p>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③ (현행과 같음)

④ -----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 -----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제출하도록 -----.

⑦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를 -- 거부시----- 분명하게 밝혀야 -----.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 법 제41조제4항 ----- 발급한다.

② ----- 않는 경우의 법령상 ----- 쓴다.

③ ----- 사람에게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과태료부과) ① -----

---- 않은 -----
----- 않거나 -----

-----.

② -----
---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

제10조(고발의 절차) ① -----
-----거짓증언-----
을 한 사람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규정) -----

-----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